

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

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-34호)
 지원대상 : 포항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, 근로자(퇴직자), 구직자 등
 지정기간 : 2025. 11. 21. ~ 2026. 11. 20. (1년)



고용유지 지원금

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하는 경우
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여 사업주 경영부담 완화

- 우선지원대상기업 : 휴업수당 80%
- 대규모기업 : 휴업수당 60~70%

포항고용복지+센터
 054-280-3052
 054-280-3054

지역고용 촉진지원금

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, 신설, 증설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
 (해당 지역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)

- 월 통상임금의 1/2(대규모기업 1/3) 최대 1년간 지원

포항고용복지+센터
 054-280-3050
 054-280-3052

사업주 훈련지원

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
 소요비용을 지원해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

- 우선지원대상기업 : 훈련비 단가 130%
- 1,000인 미만 기업 : 훈련비 단가 80%
- 1,000인 이상 기업 : 훈련비 단가 70%

한국산업인력공단
 경북동부지사
 054-230-3225
 054-230-3236

국민내일 배움카드

사회안전망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
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
- 기존 : 5년간 300만원(자부담률 15~55%)
- 지정기간 내 : 200만원 추가 지원(자부담률 0~20%)

포항고용복지+센터
 054-280-3086
 054-280-3087

국민취업 지원제도 (II 유형)

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
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- 지정일 전 3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 대상
 (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)

포항고용복지+센터
 054-288-3572
 054-288-3586

직업훈련 생계비대부

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
 (총 140시간 훈련 중 대부 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)

- 1인당 월 200만원(총 2,000만원)
 (연리 1%/신용보증료 별도)

근로복지공단
 포항지사
 054-288-5252

생활안정 자금융자

저소득 근로자의 혼례·장례·양육 등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

- 1인당 3,000만원
 (융자금리 연 1.5%-변동/신용보증료 별도)

근로복지공단
 포항지사
 054-288-5251

체불근로자 생계비용자

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

- 1인당 1,500만원
 (융자금리 연 1.5%-변동/신용보증료 별도)

근로복지공단
 포항지사
 054-288-5252